## 무상거주사실확인서

Г	무	상거	구	- 기-	0]	저	사	$\delta$ )-
		o' /	Т	-/\I	ייי	7-1	עי ∕	~

증번호(납박 생년원		성 명 연 락 처						
주	소							
 ] 거주기간 및 무상거주 사유(□ : 해당 칸에'√'표기)								
무 상 기	H 주 기 간	년 월 일 ~ 년 월 일						
무상거주	친・인척	□ 부모 □ 자녀 □ 형제 □ 배우자 □ 친척 ( )						
사 유   (관 계)	기 타	□ 친구 □ 고용 □ 기타( )						

□방문여부	건 물 소 유 자	성 명:	(서명 또는 인)
	또는	생년월일(거주자와의관계) :	(관계 : )
무상대여	전월세 계약자	전 화 번 호:	
확 인 자	무상거주 사유		

위와 같이 무상거주 사실을 신고하며, 향후 신고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무상거주 사유로 조정(감액)받은 보험료를 다시 적용함에 이의 없음을 확인합니다.

> 20 년 월 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국민건강보험공단 ○○지사장 귀하

## ※ 제출서류

- ① 무상거주사실확인서 [공단 홈페이지(www.nhis.or.kr) 서식 자료실 및 지사 비치]
  - 건물 소유자나 전월세 계약자의 확인(서명 또는 인)을 반드시 받아야 함
- ② 건축물관리대장, 등기부등본, 지방세납부영수증 또는 무허가건물확인서 중 하나
  - 무상대여 확인자가 건물 소유주일 경우 건물소유자 확인용
  - 무상거주자의 주소와 반드시 일치해야 함
  - 공부상 서류 제출이 어려울시 아래 건물 소유자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작성

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「전자정부법」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(건축물관리대장, 건물등기부등본)의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(구비서류 정보 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,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 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제출할 수 있음). □동의 □**부동의** 건물주 성명 : (서명 또는 인)

- ③ 대여자의 신분증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사본
  - 사실 확인을 위한 유선통화가 이루어질 수 있음.
- ④ 전월세계약서
  - 무상대여 확인자가 전월세 계약자일 경우 임차권자 확인용
  - 무상거주자의 주소와 반드시 일치해야 함.
- ⑤ 무상 대여자가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(공단 전산상 확인 될 경우 전산화면 출력)